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2. 4. 27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4. 27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9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5. 7) 상정
 - 제9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5. 7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□ 제안이유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의 업무 대행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하여 통반장증을 발급하여 통반장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
-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 간 경계,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 및 현재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통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반장증 발급을 신설함(안 제5조제5항)
- 통반 행정구역 조정

구 별	현 행		개 정		비 고 (증감내역)
	통	반	통	반	
계	1,133	7,121	1,133	7,123	반 2
원 미 구	601	3,773	601	3,775	반 2
소 사 구	257	1,896	257	1,896	
오 정 구	265	1,452	275	1,452	

○ 통반 증감내역

- 상동신도시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통반장이 전체가 신분증이 필요한지?	○ 제일선에서 동행정을 보조하는 통반장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주민과의 접촉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필요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통반설치조례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장에게도 신분증 발급이 필요함

나. 반대토론

-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는 반장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수시로 교체되고 있고 위촉도 어려운 실정으로 반장에게까지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
- 신분증 발급도 중요하지만 반장의 역할에 대하여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요지

- 별 첨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592호
의결년월일	2002. 5. 10 (제95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5. 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수정이유

- 통장 기능 강화와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대주민 신뢰감 회복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함

- 그러나 반장의 경우 각 동에 위촉이 안 된 반이 상당수이고 수시로 교체되는 실정으로 반장에게까지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조항을 삭제

2. 주요골자

- 안 제5조제5항 통반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수정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5항 중 “통반장에”를 “통장에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~④ (생략) ⑤(신설)	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통반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통장.....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92호
의결년월일	2002. 5. 10 (제95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4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의 업무 대행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하여 통반장증을 발급하여 통반장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
-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 간 경계,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 및 현재의 지면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통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반장증 발급을 신설함(안 제5조제5항)
- 통반 행정구역 조정

구 별	현 행		개 정		비 고 (증감내역)
	통	반	통	반	
계	1,133	7,121	1,133	7,123	반 2
원 미 구	601	3,773	601	3,775	반 2
소 사 구	257	1,896	257	1,896	
오 정 구	265	1,452	275	1,452	

○ 통반 증감내역

- 상동신도시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통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2 중 원미구 상1동을 별지1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~④(생략) ⑤(신설)	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~④(현행과 같음) ⑤통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1]

구 관할 동별 통반 현황

구분 동별	구분		통 수	반 수	비 고
	구분	동별			
계	35		1,133	7,123	

소 계	18	601	3,775	
원 미 구	심 곡 1 동	20	114	
	심 곡 2 동	23	139	
	심 곡 3 동	18	110	
	원 미 1 동	26	165	
	원 미 2 동	26	161	
	소 사 동	14	99	
	역 곡 1 동	26	184	
	역 곡 2 동	29	193	
	춘 의 동	36	182	
	도 당 동	43	238	
	약 대 동	35	205	
	중 동	29	208	
	중 1 동	47	252	
	중 2 동	29	212	
	중 3 동	41	229	
	중 4 동	40	234	
	상 동	31	171	
상 1 동	88	679		
소 계	10	257	1,896	
소 사 구	심 곡 본 1 동	25	139	
	심 곡 본 동	21	167	
	소 사 본 1 동	18	127	
	소 사 본 2 동	14	101	
	소 사 본 3 동	36	279	
	범 박 동	15	104	
	피 안 동	34	293	
	역 곡 3 동	38	257	
	송 내 1 동	29	212	
	송 내 2 동	27	217	
소 계	7	275	1,452	
오 정 구	성 곡 동	62	290	
	원 종 1 동	36	197	
	원 종 2 동	33	207	
	고 강 본 동	44	237	
	고 강 1 동	27	150	
	오 정 동	33	168	
	신 흥 동	40	203	